

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대표자	생년월일	
	주소(기관 소재지)		
설립 목적			
설립 연월일			
업무 범위	[]고속철도차량 []일반철도차량 []도시철도차량 []특수차		

「철도안전법」 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운영계획서 2.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(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·학력·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.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.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(印影: 도장 찍은 모양)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요건 심사	→	결정	→	철도차량 정밀안전 진단기관 지정	→	통보
신청인					처리기관: (국토교통부)					